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5년 7월 지방세 결손(시효결손) 결정결의

징수권의 소멸시효(5년)가 완성된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하고, 붙임과 같이 결손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.

1. 시효결손 대상 :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(2010년 4월이전 부과분)
2. 결손 건수 및 금액 : 733건/금170,040,650원
(금일억칠천사만육백오십원)

- 붙임 : 1. 결손결정결의서 1부
2. 결손집계표 1부
3. 결손내역서 1부. 끝

주무관 **황순옥** 38세금징수팀장 **김회동** 세무관리과장 **代추승열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8/06
代 **김희주**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7911 () 접수 ()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24 /전송 02-3423-8833 / soo8853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5,6)